

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전기차  
충전기(영구시설물) 설치 동의안



구 미 시

#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 설치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: 2023. 9. .  
제출자: 구미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과 충전대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,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충전시설 필요
- 환경자원화시설 주민편익시설 주차면 2개소에 한국전력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함.

※ 역할 및 업무분담 내역

기관명	역할 및 업무분담 내역
구미시	사업부지 제공(공유재산 유상허가)
한국전력공사	충전기 구축비용 100% 부담 및 운영
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 제2항 및 「구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7조 제5항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예치 등의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\*을 축조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, 본 안건을 상정합니다.

\* 영구시설물 : 공유지에 고착되어 이동할 수 없는 시설(주차장, 수소충전소 등)

※ 근거 :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마목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사업개요

- 1) 사업명 :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 설치사업
- 2) 기간 : 2023. 9. ~ 12.
- 3) 위치 : 산동읍 백현리 70-3번지 일원(주민편익시설)
- 4) 주요시설 : 급속 충전기 2기

### 나. 운영방법

- 1) 운영주체 : 한국전력공사
  - 2) 운영기간 :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이후 10년(10년 이내 1회 연장 가능)
  - 3) 운영범위 :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,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
  - 4) 운영방안 : 개방적 운영
- ※ 근거 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 제11항

### 다. 전기충전기 설치계획

- 1) 설치장소 및 수량 : 설치시설 2개소 / 충전기 2대(급속 2)

### 라. 향후 추진계획

- 1) 2023. 9. :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 설치 동의
- 2) 2023. 9. :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운영관리 협약
- 3) 2023. 10. : 사업 착수
- 4) 2023. 12. : 사업 완료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## 관계법령

□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7. 27.>

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,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,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□ 「국유재산법」

제18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,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 ~ 2 생략

3. 지방자치단체나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(이하 “지방공기업”이라 한다)이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,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

4 ~ 6 생략

② 생략

제8조의2(사회기반시설의 범위)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“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,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
1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

가 ~ 라 생략

마. 전기자동차 충전시설

2 ~ 3 생략

② 생략

## 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랑·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. 다만,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시행령

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
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 ~ 2 생략

3.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.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.

4 ~ 11 생략

② 생략

□ 「구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

제7조(충전시설의 설치·운영에 대한 지원)

① 생략

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·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, 공유재산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·수익허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하는 경우에는 「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④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.

⑤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

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구미시의회 동의 받아야 한다.

소 관 부 서		자원순환과
입 안 자	과 장	김 형 순
	팀 장	박 유 리
	담 당 자	이 성 역 (480-5233)